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단계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검토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관련 법률의 검토의 방향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기능은 정보의 전달 서비스라고 보겠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데이터베이스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중요한 기반 요소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입법에 반영시킨바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미리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작하여야 운영에 있어서 법적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계획화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겠는가의 문제이다. 저작권법의 제6조에서 '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였다. 즉 보호의 요건을 ① 체계적인 구성일 것, ② 소재의 선택·배열이 창작성이 있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는 편집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또한 앞으

로 계속 축적할 정보(원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검토이다. 원시 정보로서 개개의 정보는 저작물성의 요건에 미흡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하여 그 집합체로서 창작성이 있을 때에는 법적 보호도 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축적되는 정보 소스가 하나 하나 모두 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저작물의 성격이 있는 정보 소스는 법적 보호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후자의 경우는 배열·구성에서 창작성을 추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법적 보호가 미흡할 경우 경쟁자가 복제하여도 침해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축적될 개개 정보의 저작권자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앞의 둘째에서 밝힌 저작물성을 갖춘 정보의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자가 따로 있게 마련이다. 이들 저작권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개개의 권리자로부터 모두 사용 허락을 받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수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권리자의 소재 파악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가장 애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물성이 없는 정보는 질

적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가 어렵다. 반대로 저작물성 있는 정보는 양질이지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있어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도록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축적된 정보들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불건전 정보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불건전 정보의 유형을 매우 광범위하다. ① 국익을 해치는 이적 표현물 ②음란·퇴폐·폭력성 표현물 ③ 사행심 조장 및 비과학적인 정보 ④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의 조성 정보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저작권·상표권·의장권 등)의 침해 정보 ⑥ 저속한 용어의 사용 등 10여 항목이나 된다.

다섯째, 정보의 제공 등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경제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 하여도 운영 과정에서 법적인 장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동에 있어서 제고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베이스는 ① 원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처럼 원자재의 공급·확보가 수월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② 또한 운영 과정 즉 운영체제가 단순해야 한다. 수시로 또는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수정·갱신해야 한다면 정보의 신선도는 유지되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소요된다. 또한 프로그램 시스템이 복잡하다면 정보 사고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정보의 오류', '정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운영 과정에서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③의 요건으로는 수요자가 많아서 '채산성'이 있어야 한다. 제조물의 경우 생필품과 같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 이용자의 광범위한 확보가 운영

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3요소는 원시 정보 확보, 운영 체계의 단순화, 수요자의 시장성 등이 핵심 과제이며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 호('96, 8월호 - 9월호)에서 밝힌바 있거니와 ①정보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②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운영 과정에서 검토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다.

데이터베이스 제호(또는 명칭)에 관한 검토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명칭이 있다. 소설의 경우 '목민심서', '흙', '상록수' 등이 소설의 명칭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각각 그 명칭이 있다. 또한 법령 정보검색 시스템, 판례 정보검색 시스템, 의료 정보시스템, 증권 정보시스템 등등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 중심의 명칭이 있다.

또한 별도의 고유명사를 부착시키는 명칭이 있다. 예컨대 삼성의료정보시스템(가칭), 대우자동차 유통정보시스템(가칭), 현대건설시공정보시스템(가칭) 등 회사 고유명사와 함께 '제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 성을 인정받아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이다. 예컨대 소설의 '목민심서', '애마부인', '상록수' 등 제호에 관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영화 '애마부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서울 고등법원 판결 1991. 9. 5 결정, 91과 29 손해 배상).

…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이러한 창작물이기만 하면 그 저작 한때로부터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標識)에



법제코너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적실무(연재)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설의 제호인 ‘애마부인’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주장도 이유 없다.....

위 서울 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저작물로서의 요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제호(題號)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위의 판결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를 살펴본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의 유형에 속한다.(저작권법 제6조)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제호(명칭)’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A회사가 개발한 ‘○○법령·판례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B회사에서 사용하여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법령·판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알려진 제호(또는 상호)로서 소비자(애용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즉 회사의 ○○법령·판례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B회사는 법적으로 저촉 받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표·포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위의 법규정 나. 에서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제호

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된다. 이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여 애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을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저촉되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부정경쟁방지법제18조제1호)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과연 ‘백두산 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인가에 있다. 개발되어 상당 기간 폭넓게 이용되고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었을 경우 해당된다.

대법원의 판례(1995. 7. 14판결 94도399)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표지 등이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널리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진 정도’로서 족하다.’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호의 경우도 정보 통신 업계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맺음말 : 법적 검토의 필요성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정보통신사업의 종합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유통이 정보화의 핵심이며 데이터베이스는 글자 그대로 데이터의 저장처(창고)로서 그 구실을 제대로 하여야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의 기반 요소 즉 컴퓨터 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전송망, 운영 요원, 단말기(터미널) 등 모두가 포함되는 사업이다.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관한 법적 문제, 전송 과정에서의 장애 사고, 최종 사용자에 의한 오류 등을 종합적인 정보 사고가 데이터베이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편으로는 독점적·배타적이고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야 사업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 호에는 데이터베이스 원시 자료의 수집·배열에 관하여 살펴보자 한다. **DIC**